

對國會 光州問題 對策(案)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

국방과 과학기술 연구위원회
1988. 5. 10. 유정
유정
1988. 5. 10. 유정

韓國國防研究院
한국국방연구원

目 次

- I. 問題의 提起
문제 제기

- II. 國內輿論 綜合
국내 여론 종합
 - 1. 野團 3黨의 見解
야권 당 견해
 - 2. 有關團體 主張 및 言論 論調
유관단체 주장, 언론, 농민위원회
 - 3. 綜合分析 評價 對 19호의 對거
종합분석, 평가, 광주시태 관련 규정
제 19호의 對거 對거의 對거

- III. 國策 方針 方案
국회 대책 방안
 - 1. 基本 方針
기본 방침
 - 2. 具體 戰略
대응 전략
 - 3. 對政府 攻勢 豫想 案
대정부 공세 예상 주제
 - 4. 各 問題別 答復 草案
각 주제별 답변 (초안)

- 附錄 附錄
부록
 - 1. 光州市態에 關한 國防部 發表文 草案
광주시태 관한 국방부 발표문 (초안)
 - 2. 光州市態 關聯 民間資料 目錄
광주시태 관련 민간자료 목록

I. 問題의 提起 문제 제기

1. 狀況의 認識 상황 인식

○ 지난 8년간 거론 자체가 禁聲되어 있던 光州問題는 6.29 선언 이후, 金
근기시 광주문제
각한 정치상황 변화로 당면한 최내의 정치현안 과제로 제기.

○ 4.26總選 결과, 第13代 國會가 與小野人의 구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野團은
중선 제 대 국회 여소야대 구조로 전환됨 야권은
「光州問題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 國政調査權을 부여하여 무제한 감시수
광주문제 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 국정 조사권을 무제한 철저조
사 방침에 합의하였고, 수적으로 연세인 집권 民主黨에 응하지 않은
사 수적으로 열세인 在野 民主黨도 응하지
○ 없는 상황임.

○ 政府與黨은 지난 2월, 「民族融合委員會(民和委)」의 建議을 바탕으로 野
정부여당 민족화합위원회(민화위) 건의문
장성인 「光州事態 的處方案」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野團 3黨
광주사태 치유 방안 야권 3당
과 5.18 有關團體 等은 이에 불만, 야상적인 접근새를 지적하고 있
유관단체

○ 1980 年 18 日의 戒嚴令이 未嘗인 光州事態의 政治個 體로서 野
계엄령하 광주사태 정부측 당사자로서 국.
防部에 對한 詳實한 내용을 檢問한 報告書가 提出되고 있음
방부는 詳정한 필요성이

2. 政府與黨의 「光州事態 治癒方案」
정부여당 광주사태 카뮈방안

○ 政府與黨은 民和委 建議案에 입각하여 광주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최근의 정치여건에서 다소 변화하고 있음.

○ 民和委 建議文(1988.2.16)과 여당진상규명위원회
민화위 건의문

국방위 16과 여당진상규명위원회
유형규정 제 4조, 11조의 의거
위헌규정 제 4조, 11조 등 규정
이 10조, 11조의 규정이야 함.

상각제규정: 광주 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규정

정부사과: 과잉진압과 피해자지원소홀 등에 대해 정부의 사과 필요

진상조사: 진실확인, 난감, 시간지연 등을 들어 반대

책임자처벌: 과잉진압외에 교도수용, 총기탈취 등 시민일부의 범죄행위를
고려하여 대응적 차원에서 반대

사상자의 제신고 접수: 다시한번 객관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제신고 접수

보상: 국가의 지원비용을 감안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주치 및 특별법
제정, 나아가 가능하면 국민성금 마련 권고

기타 위령탑건립과 방원봉모지 공원화, 광주어린이공원 관리권이전,
취업 격차완전 등 조기 건의

○ 政府의 「光州事態 治癒方案」(1988.4.1)
정부 광주시태 치유 방안

민화위 건의
민화위 건의
靈巖洞 建립, 望月洞 묘지 공원화, 光州 어린이公園 관리권 이전, 취업알선
위령탑 망월동 광죽 공원
등을 모두 수용

대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國務總理를 위원장으로 하는 中央
協鑿機構, 光州市長을 위원장으로 하는 地域協鑿機構, 光州 각계인사로
형의 기구 광주시장 지역협의기구 광주
구성되는 民間機構 등 설치
민간기구

同 방안에 의거, 關係長官會議(1988.5.14)에서 사태관련 사망자 및
등 관계장관회의
행방불명자의 추가신고 접수, 戶口가옥 및 부상자의 개별실태조사 및 취업
알선, 보상준비 등을 결성, 실행중에 있음

○ 政府與黨의 再調査要求 受容 方針(1988.5.9 10 黨政對談會議)
정부여당 재조사요구 수교 방침 당정대책회의

진상조사나 책임자처벌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野黨이 「光州市應真相調查特委」의 구성을 결의한 경우 이에 관여된
야당 광주사태진상 조사특위

II. 國內輿論 綜合 국내 여론 종합

1. 野團 3黨의 見解 야권 당 견해

o 野團의 基本 認識 야권 기본 인식

- 光州事態 관련자중 상당수가 民正黨과 第5共和國의 反기세력이며 그들 대
광주사태 민정당 제5공화국
부분이 집권제2기 民正黨과 第6共和國에 關여하고 있기 때문에, 同 문제
민정당 제6공화국 등
를 對面 정치적 약화를 위한 好材로 간주하고 있고,
대여 호재

野團 3黨 모두 「國會光州事態真相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고 이 위원
야권 당 국회 광주사태真相조사특별위원회
회에 국감조사권을 부여하여 전상의 완벽과 방위질서 때까지 장기적 조사하
자는 주장을 펴고 있음.

가. 李民黨 평민당

- o 俞大中總裁는 자신을 이해당사자로, 第5共和國의 民正黨은 가해자로 규정
김대중총재 제5공화국 민정당
하고, 第5共和國 元집권당이 第6共和國 역시 이해자의 同列에 놓아 온건개혁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동열
책임을 분배 내지 자기 人權문제에 침략수계화
대권문제의 정략소제화

o 4.26 總選 유세에서 밝힌 光州事態 治愈方案 (4個項)
총선 光州사태 治愈방안 4개항

원건한 민주화의 실현

진상의 규명

光州市民의 명예회복
광주시민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

o 總選 이후 提示한 國會特委의 真相調査範圍 (8個項)
총선 제시한 국회특위 진상 조사 범위 8개항

사태를 일으킨 동기

사건을 조작한 방법

최종발포명령권자를 포함한 발포경위와 2차 발포경위의

시민학살근태

사망차수

金大中氏를 배후주종자로 연계시킨 정치적 이의
김대중씨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과정에서의 잔학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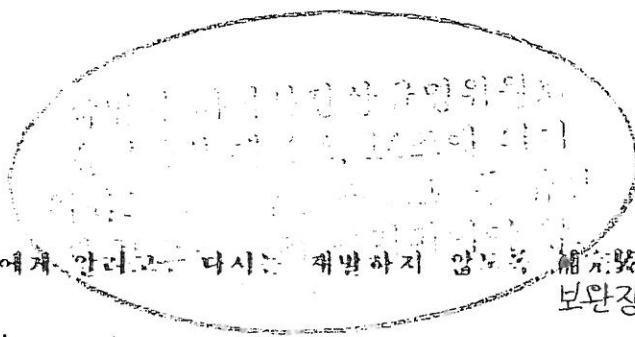
당시 美國의 역할
미국

o 市民黨은 前大統領을 포함하여 조사역할 聖域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市民黨은 前大統領 聖역에 對한 정치적 배역이 있을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나. 民主黨
민주당

- 國會特委의 활동에 있어 위원장은 野黨이 차지하고, 관련책임자중 당시 大
국회특위 야당
統領, 保安司令官, 特選司令官, 20師團長 등을 소환조사.
통령 보안사령관 특전사령관 사단장
- 당시 安企部, 國防部 등 기록과 政黨, 社會團體(특히 光州事態 有關團體)의
안기부 국방부 정당 사회단체 광주사태 유관단체
기록 검증.
- 處罰에 관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면 처벌해야 하나, 단순한 정치적
처벌
사건으로 평가되면 관련자가 공직사퇴 등 政治道義的 責任을 져야」 하며,
정치도덕적 책임
그 방향은 輿野 協議로 결정하자고 주장.
여야 협의

다. 共和黨
공화당



- 사내의 진상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補充裝備
보안장기
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 진상조사 목적이 누구를 처벌하는 報復的 次元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보복적 차원
그 방향은 政黨間의 合意로 결정.
정당간 합의
- 事態解決 順序로 特委구성 > 진상조사 착수 > 사건 제조명 > 피해자
사태해결 순서 특위
명예회복 및 보상 > 관련자의 道義的 責任 추궁(法的處罰 不願)의 절차 제
도덕적 책임 법적처벌 불원
시.

2. 有關團體 主張 및 言論 論點
 유관단체 주장 언론 논조

가. 有關團體의 主張
 유관단체 주장

- 光州事態 有關團體는 현재 30여개 이상이며, 그중 가장 유력한 단체로는
 광주사태 유관단체
 「5.18 民衆抗爭繼承과 眞相糾明을 위한 汎民主勢力 共同鬪爭委員會(약칭
 민중항쟁계승 진상규명 범민주세력 공동투쟁위원회
 5共鬪委: 12개 단체로 구성)」와 「5月運動協議會(4개 단체로 구성)」, 「
 5공투위 5월운동협의회
 5月抗爭同志會」 및 「5.18 光州民衆革命犧牲者 慰靈塔建立 및 紀念事業
 5월항쟁동지회 광주민중혁명희생자 위령탑건립 기념사업
 汎國民 推進黨委員會」임.
 범국민 추진위원회

- 光州事態 眞相調査에 대한 이들 團體의 共通된 主張은
 광주사태 진상조사 단체 공동 주장

피해당사자의 민주인사를 주축으로 한 眞相調査를 구성
 진상조사위

현실원형(군부대이동과 대량학살, 병영지)의 재출발 차단

美國의 개입 여부
 미국

정확한 사상자수 규명 등이며.

- 이들 根據로 근거

光州市民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한 特別法 제정
 광주시민 특별법

全南道廳 등의 紀念館 지정 및 慰靈塔, 革命塔 건립
 전남도청 기념관 위령탑 혁명탑

國定教科書에 5.18 意味의 삽입 등을 요구하고 있음.
 국정교과서 의미

< 표 > 5.18 有關團體의 光州事態 解決方案 主張
 有關단체 광주사태 해결방안 주장

단체	주 장 요 지
5.18민중항쟁 계승 및 진상 규명위한 범 민주세력 공동 투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인사가 주축이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특별재판소 구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 전남도청과 망월동묘역 등의 성역화 및 기념관 건립 - 피해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 - 5.18정신의 계승을 위해 국정교과서에 역사적 의의 게재
5월운동협의회 5.18 민중 항쟁 동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민주인사등으로 진상조사위 구성, 조사후 책임자처벌 - 80년 당시 재판 파기, 공정한 사법절차로 광주시민 명예회복 - 도청, 상부관의 기념관화, 도청앞 기념탑, 망월동묘지 성역화 - 유가족, 부상자, 행불자, 구충가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상 - 국정교과서에 5.18항쟁의 역사적 의의 수록 - 5.18의 공휴일 지정 및 교과서에 5.18의 역사적 의의 수록 - 사망자수와 학살의 실태 공개 - 행불자와 안배장 장수 공개 <p>* 민간주도 진상조사단 구성(1988.5.23)</p>

<p>혁명희생자 위령탑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 추진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피해자 및 가계 민주인사, 정부 합동특별조사위 구성 - 광주 5.18을 일으킨 의도와 원인 규명 - 군병력을 출동시킨 책임과 반포명령자 색출 차단 - 학살의 실태와 정확한 사망자수 및 피해상황 발표 -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및 사후 사건조작 경위 규명 - 군출동명령과 관련, 미국의 개입여부 조사 - 명예회복, 보상위한 특별법 제정, 위령탑건립, 망월동성역화
<p>기 타 관련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광주 5.18구속자 협의회 공동조사단 구성 법정 무죄판결 요구, 불가시 군법회의관계관 고소 o 5.18 광주의거유족회 5.18유관단체와 국회불위의 공동조사 요구 시혜가 아닌 상당한 법적결과를 통한 피해보상 실시 o 전주교 광주대학교군사재단 국회개원과 동시 진상규명특위 구성, 진상규명과 책임자 색출 광주관련 양심수 등 모든 정치범의 석방

나. 評論 論調
언론 논조

- 政治的 報復을 위한 문제학대 不顧 「光州問題의 핵심은 狀況의 해설이
정치적 보복 불원 광주문제 상황
아니라 그 解決이다」. (朝鮮)
해결 조선
- 事態에 있어 분명 피해자는 光州市民이고 가해자는 鎭壓軍임.
사태 광주시민 진압군
(東亞) 동아
- 解決은 光州問題에 관한 정치적 책임자들의 承認과 謝罪로 귀결되어야 함.
해결 광주문제 시인 사과
다만, 몇 마디의 정치적 성격규정이나 해명과 물질적 보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서울)
- 국민의 이 傷處는 조속히 治癒하여 전국민이 적대감없이 和解하고 화합하여
야 함. 특히 光州事態는 兇과 恨으로 맺어진 것이므로, 관련책임자가 진심
으로 反省하고 宥恕를 받아야 事態의 根源的 解決이 가능한 것임.
(中央) 중앙

光州事態의 根源的 解決이 가능한 것은
관련 책임자가 진심으로
反省하고 宥恕를 받아야
위장된 謝罪로써
해 19호에 의거 반라되어야 함

3. 綜合分析 및 評價
 종합분석 평가

○ 政府與黨, 野黨 및 5.18 有關團體의 光州事態에 관한 見解(要約)
 정부여당 야당 유관단체 광주사태 견해(요약)

기관	진상조사	사후처리
정부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국회 특위 구성에는 참여 · 국회조사에 있어 전대통령의 출석요구 반대 * 사상자신고 제정수(기실시증) 국방위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사과 및 성격제규정 · 피해보상 실시, 취업알선 등 · 위령탑건립, 망월동묘지공원화 · 책임자처벌 반대
야권 3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특위 구성 야당 주도 · 특위에 국정조사권 부여 · 철저하게 무기한 조사 · 국회조사에 있어 성역 불인정 · (평민) 조사대상으로 유발동기, 조작방법, 반포경위, 학살실태, 사망자수, 정치인연루의도, 수사잔학행위, 미국역할등 제시 · 피해자, 민주인사로 조사위구성 (국회특위와 별도로 또는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상규명위원회 · 성격제규정 (평민) 광주의거, (민주, 공화) 광주민중항쟁 · (평민)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 · (평민) 처벌에 정치적배려가없 · (민주) 사리아날때 도의적책임 · (공화) 관련자 도의적책임 * (민주, 공화) 사법적단죄에는 반대하나 정당협의시 가능 · 성격제규정과 이에 따른 제삼 및 구속자석방, 사면

유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 요구 · 조사내용은 군부대이동과 대량 학살명령자, 발포명령자, 사상자수, 미국개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학살원용 차단 · 기념관지정, 망월동묘지성역화 위령탑, 혁명탑 건립 · 국정교과서에 5.18의미 삽입
-------	--	---

○ 國內輿論 綜合결과, 國會特委의 證據에는 대체로 意見이 接近하나, 국내여론 종합 국회특위 설치 의견 접근

· 國會特委의 구성 및 권한, 활동기한 등에 있어서는 輿野 의견이 상치. 國회특위 여야

· 그 조사대상에 있어서도 前大統領 포함 여부에 관해 의견대립. 前대통령

· 조사범위에 있어서 有關團體들이 정확한 사실규명에 주력하는 데 비해, 有關단체

· 市民黨 등 野黨은 유발의도, 조작경위, 정치인 連累意圖 등 정치적 목적의 野당 對 野黨에 비중을 두고 있음.

○ 19 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상충되고 있음. 19 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상충되고 있음.

○ 事後處理에 있어서는 政府與黨의 責任再規定, 政府여당 성격 재규정, 19 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상충되고 있음. 事後處理에 있어서는 政府與黨의 責任再規定, 政府여당 성격 재규정, 19 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상충되고 있음.

· 有關團體들은 紀念館 지정, 望月洞墓地 聖域化, 國定教科書에 5.18 의 有關단체 기념관 망월동묘지 성역화 국정교과서의 意味 수록 등을 주장하고 있고.

· 특히 책임자처벌 문제에 있어서 野黨은 정치적 배려하의 책임자처벌 (공직사퇴 등 도의적 추궁 의미)을, 有關團體들은 관련자 처단을 요구하 野당 有關단체 고 있어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같은 政黨 및 有關係團體들의 各異한 主張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立場과 觀
 點이 相異하다는 데 起因하는 것임.
 각 상이 기인

- 主民黨은 스스로 한 피해당사자로서 光州問題에 관한 한 가장 유리한 고
 평민당 광주문제
 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第1野黨인 立場에서 문제해결의 기대와
 제1야당
 더불어 책임도 큰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이 문제를 다른 野黨들의 협력
 야당
 을 구하여 처리하되, 자신의 運身幅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문제를
 운신폭
 정치적으로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

- 民主黨과 共和黨은 同 문제가 자신보다는 다른 野黨에 유리한 만큼 결코
 민주당 공화당 등 야당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 점에서 타협의 소지가 크며,
 다만 主民黨의 자세가 다소 柔弱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넓히기
 평민당 유약
 위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有關係團體의 경우는 직접당사자로서 순수하게 光州事態의 해결을 바라는
 유관단체 광주사태
 층과 간접당사자로서 보다 廣泛적으로 사회변혁을 꾀하는 층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前者의 경우 다소 強硬적인 부분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
 전자
 순수하게 事態治癒에 제한하여 접근한다면 그 성격이 異되므로 後者에
 사태치유 후자
 재까지도 확신될 수 있음 것임.

○ 以上의 分析評價 결과, 향후 光州問題의 해결에 있어서는 一定한 程度의 運
 이상 분석평가 광주문제
 려가 있을 것이나, 政府與黨의 능력 여하에 따라 破綻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정부여당 파국
 크지 않다고 보여짐.

國會特委는 그 조사방법과 절차를 협의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국회특위
 것으로 판단되나 경우에 따라 運轉의 後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실제 特委 활동에 있어서도 조사대상과 내용을 둘러싼 문제가 확산된 것이
나, ^{특위} 적절한 대응만 취한다면 野黨 및 在野 모두의 非活化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야당 재야 비활화

또한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有關團體들이 제시한 紀念館 지정 등의 주장은
유관단체 기념관
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政府當局에 의해 부분적 수용이 가
능하다고 봄. 정부 당국

다만 책임자 처벌을 둘러싸고 처벌 여부 및 정도, 처벌대상자 범위 등을
둘러싸고 최대의 정치적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국방부와 각 부처에 상임 광우위원회
운영위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차르로 중 유정
제 19조에 의거 판타되어야 함.

III. 國會 對策方案 국회 대책방안

1. 基本 方針 기본 방침

○ 眞實糾明 作業에 積極 參與 진상규명 작업 적극 참여

- 光州事態의 진상규명 작업은 현재의 변화된 정치상황에서 불가피한 시대 광주사태
적 요청으로서,
- 기존의 과도한 保安政策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이
보안정책
를 국민에게 弘報하는 노력이 요구됨.
홍보

○ 眞의 政治的 利用 拒否 군 정치적 이용 거부

- 진상조사 작업은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여 國民和合 次元에서 事態의 治癒
국민화합 차원 사태 치유
에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 同 문제와 軍과의 관련성을 飛火, 黨利黨略的으로 이용하려는 차태에 내
동 군 비화 당리당략적
해서는 단호히 거부하여야 함을 분명히 인식,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함.

○ 眞의 士氣沮喪 防止 군 사기저상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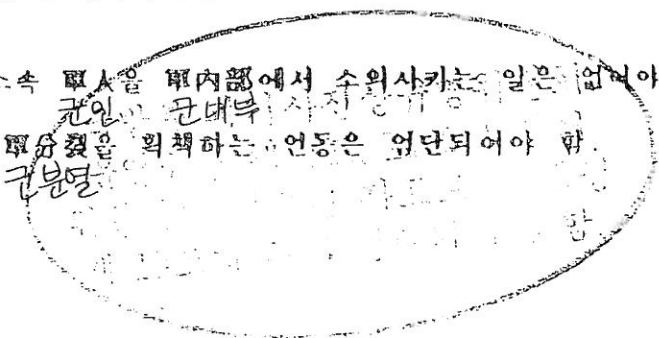
- 眞은 國家安保의 유지를 절대절명의 課題를 안고 있는 만큼, 여하한 경
군 국가안보
우에도 그 사기를 저하시켜 戰力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전력
하에

- 당시 사태의 진압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부 軍人의 過激行動을 全體軍과 연결, 그 명예를 실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軍내외에 명확히 傳達함.

○ 軍內部 分裂 防止
 軍내부 분열 방지

- 조직의 특성상 上命下服은 軍의 基本 要諦라는 점에 유의하여, 당시 사태진압에 참여했던 軍이 비록 잘못된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수행했다 해도 이는 당연한 軍人의 도리와 의무로서 결코 비난될 만한 일은 아니며, 오히려 軍內部에서도 계속 높게 평가되어야 함.

- 또한 당시의 진압부대와 소속 軍人을 軍內部에서 수위사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회로 軍分裂을 획책하는 언동은 엄단되어야 함.



2. 對應 戰略
대응 전략

○ 國會의 真相調查活動에 적극 협조하여 軍의 입장을 對內外에 弘報하는 기회
국회 진상조사 활동 군 대내외 홍보
로 이용.

- 國會 本會議 및 常任委員에서의 질의에 진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

- 特委구성후의 조사활동에 대해서도 수집가능한 자료를 총동원하여 협조하
특위
고, 요청시 國防部, 各軍 및 保安司 등 자료를 공개 지원함.
국방부 각군 보안사

○ 國會調查時 당시의 부분적 잘못을 是認, 眞實糾明을 위한 軍의 의연한 태도
국회 조사시 시인 진상규명 군
를 견지하여,

- 당시 사태에 대해 兩是論의 입장에서 최초 계엄확대 조치에 따른 병력증
양시론
약는 당연한 합법적 조치였고,

- 계속되는 무장부상태의 해결을 위해 軍의 兩進駐도 불가피하였음을 인정
국방군 재진주
함.

- 다만 초기의 일부 過剩總壓에 대한 光州市民, 學生의 항거가 불가피했다
과격진압 광주 시민 학생
는 점도 인정하나, 이는 당시의 국한상황에서 불가피하였고 또 일부 현

기완성된 장병에 의해 相乘作用을 일으켰음을 軍 全體軍이나 最高 軍指揮官
상승작용 전체군 최고 군지휘관
의 의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

○ 國會特委 陳述의 事前調整
 국회특위 사전조정

- 證僑役의 경우 모든 관련자의 자유로운 證言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예비역 증언
- 軍內部의 士氣를 고려하여, 現役의 경우에는 당시 聯隊長級(特戰司는 大
 軍내부 사기 현역 부대장급 특전사 대
 隊長) 이상에 한해 서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黨政協議 등을 통해 사전
 대장 당정 협의
 질증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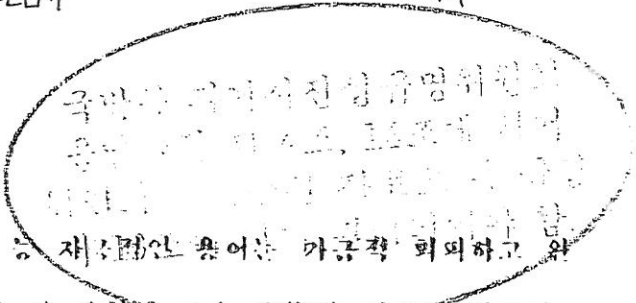
○ 國會의 處罰 與否 決定에 대한 事前協議
 국회 처벌 여부 결정 사전협의

- 證僑役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國會內의 合意에 맡기되,
 예비역 국회내 합의
- 現役의 경우에는 불처벌 또는 現任願 보장 등을 교섭하여 軍內部에의 영
 현역 현임기 군내부
 향을 極小化하여야 함.
 극소화

○ 其他 留意하여야 할 事項
 기타 유의 사항

國會 陳述時 暴舉, 暴徒, 亂動 등 자정권인 용어는 가급적 회피하고 위
 국회 시 폭거 폭도 난동
 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野黨議員 및 방정객 등을 宜檢할 必要가 있으며,
 야당의원 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民軍關係의 발전을 위하여 國防部(韓), 「光州事態
 軍군관계 국방부 광주사태
 白書」(假稱)을 발간, 주로 在野側 시각으로 기술된 기존의 관련책자
 백서 (가칭) 재야측
 (약 20여 종)의 比較研究 硯에 대해 要約된 사실을 是正해야 함.
 비교연구 군 시정



3. 對政府 政勢豫想主題
대정부 공세 예상 주제

* 國防部關聯 政勢豫想主題는 7個 部門 50個 項目임.
국방부관련 공세 예상 주제 개 부문 개 항목

0 光州事態의 背景 및 動機
광주사태 배경 동기

光州事態의 성격 규정(暴動/騷擾/義舉?)
광주사태 폭동 소요 의거

5.17 措置의 정치적 의도(정권장악 기도?)
조치

5.16 全軍指揮官會議의 내용과 결정사항 공개 용의
전군지휘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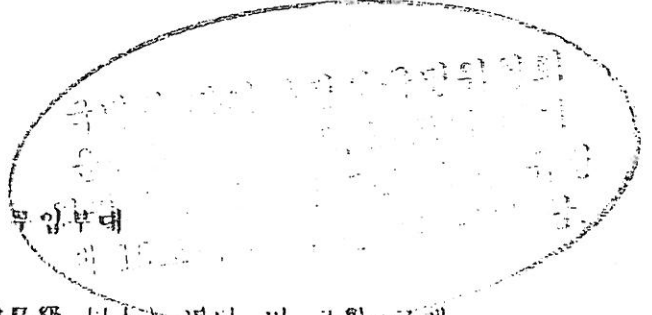
5.17 措置의 합법성(威嚴法 요건 충족?)
조치 계엄법

5.17 措置의 國務會議 심의과정
조치 국무회의

5.17 진야의 學生示威 상황 평가
학생시위

5.17 措置後 光州地域 군부입과정과 투입부대
조치후 광주지역

당시 투입 및 투입부대의 지휘관(大隊長級 以上) 명년 및 구함 공개
대대장급 이상



0 光州事態의 事前事後 操作
광주사태 사전사후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國保委: 5.31 설치)와 光州事態와의 關係: 5.16
국가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국보위 광주사태

全軍指揮官會議에서의 國保委 구성결의 진위
전군 지휘관회의 국보위

당시의 光州地域 경찰력과 시위상황(威嚴軍增援 필요 여부)
광주지역 계엄군 증원

- 초기 飛火後 軍부대 增援과정과 增援부대
비화후 증원 증원
- 최초 戒嚴司발표의 지연 이유
계엄사
- 戒嚴司의 최초 및 중간 발표의 허위성
계엄사
- 정부발표('80 戒嚴司, '85 國防長官) 내용과 시증 자료와의 차이
계엄사 국방장관
- 현재 보유중인 光州事態 관련자료 목록 공개 용의
광주사태

o 發砲経緯와 發砲命令者
발포경위 발포명령자

- 최초 發砲시각 및 이유
발포
- 최초 發砲명령 하달시각 및 경위
발포
- 發砲결정과정 및 최고명령권자
발포
- 실제發砲와 發砲명령과의 時差 여부(있을 경우 관련자문책 용의)
발포 발포 시각
- 당시 示威隊의 무기탈취시각과 發砲시각과의 관계
사위대 발포
- 自衛權의 해석(戒嚴軍이 시민을 향해 發砲한 법적 근거) 軍檢상규명위원회
자위권 계엄군 발포

軍檢상규명위원회
2005.03.09
광주사태 관련 자료 검토
발포 관련 자료 검토
사위대 관련 자료 검토

o 市民抵抗과 軍鎮壓作戰
시민저항 군진압작전

- 당시 流言蜚語 및 現存 비디오 테이프의 사실 여부
유언비어 현존
- 하살행위 명령자(지시/방조 목인?)

최초의 사망자 발생 시각과 시간별 사망자수

特設部隊의 혼란상황과 당시 진압훈련과정
특전부대

- 사상자중 非示威隊員 포함 여부 및 숫자
비시위 대원
- 示威隊 무저항상태에서의 戒嚴軍 총격 여부
사위대 계엄군

연행자학살 주장 진위

- 진압병력중 敍懲者 및 표창자 명단 및 근거
서훈자

死亡者數 및 被害狀況
사망자수 피해상황

정확한 사상자, 行不춤의 수 및 명단 공개 용의
행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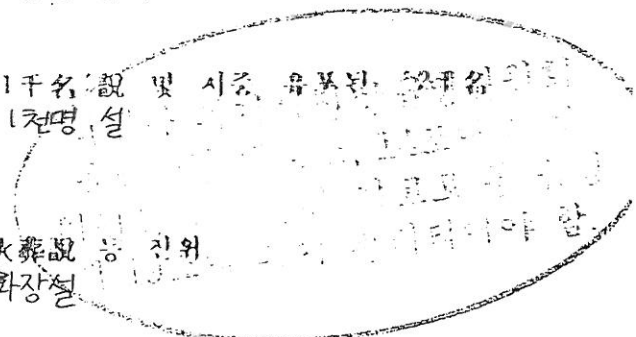
당시美大使 글라이스텐氏의 死亡者 1千名 說 및 시중 유복한 市民의 死亡 說에 대한 사실확인
미대사 씨 사망자 1천명 설 사망 설

일부 屍身에 대한 假埋葬 및 暗葬, 火葬說 등 진위
시신 가매장 암장 화장설

被死傷者의 사후조치 내용
군사상자

재산피해발생상황: 示威隊 장악시의 光州狀況 판단
사위대 광주상황

戒嚴下의 피해보상 상황
계엄하



o 特定政治人 連累의 政治的意圖 및 搜查過程
특정정치인 연계 정치적의도 수사과정

- 金大中氏를 배후조종자로 연계시킨 정치적의도(사건제외?)
김대중씨
- 당시 金大中氏 및 이른바 下手人의 光州事態기간 전후의 행동
김대중씨 하수인 광주사태
- 金大中氏 및 이른바 下手人에 대한 재판기록 제출 용의
김대중 하수인
- 당시 軍法會議 재판부 구성 및 독립성보장 여부
군법회의
- 保安司수사의 법적 명분과 수사과정에서의 苛酷行爲
보안사 가혹행위
- 당시 연행자 및 구속자 전원 명단 제출 용의
- 光州事態와 金載圭 死刑執行과의 관계
광주사태 김재규 사형집행

o 당시 美國의 역할
미국

- 5.17 掃蕩의 美國과의 관계(사전협의/사전통보/사후통보)
조치 미국

- 國保委 구성과 美國과의 관계()
국보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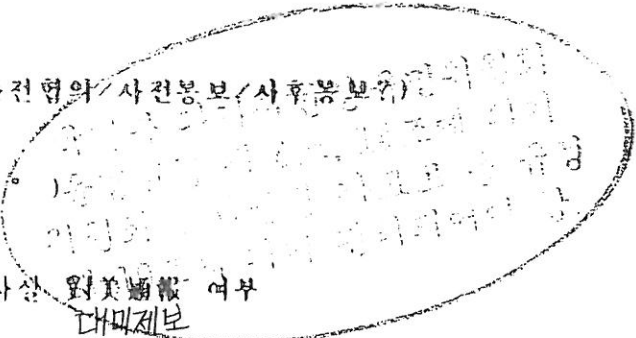
特戰部隊의 최초 투입 및 增援사실 對美通報 여부
특전부대 증원 대미제보

陸軍20師團 투입시 聯合司令部의 승인 여부
육군 사단 연합사령관

최후 진압작전의 對美通報 여부
대미제보

美海軍艦隊 파견(5.27)의 事前 對韓通報 여부
미해군함대 사전 대한제보

金大中事件 해결에 있어서의 美國의 역할
김대중사건 미국



4. 各主~~題別~~ 答~~案~~ (尊~~案~~)
각 주제별 답변 소안

가. 光州事~~態~~의 背景 및 動~~機~~
광주 사태 배경 동기

o 光州事~~態~~의 解~~釋~~ : ° 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 제엄군과 학생·시민간의 충돌
광주 사태 해석
돌로 1천 명 규모의 사상자를 낸 사건 °

- 제5공화국 : '불순분자의 조종을 받은 난동분자들의 내란' 으로 성격 규정.

同사태 관련자들을 '폭도'라고 호칭, 범법자로 처리

- 제6공화국 : '광주 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격 재규정

* 광주사태를 '국민저항권(헌법 전문)'이라는 합헌적 근거로 해석이 가능한가의 문제

o 光州事~~態~~와 5.17, 12.12事~~件~~과의 關~~聯~~性
광주 사태 사건 연관성

- 5.17 과 12.12 사건을 이론상 법학의 '헌법변동론', 정치학의 '권력변동론'으로 해석할 때, 동사건이 제5공화국 정권 성립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
80년 5월 전국규모의 학생시위가 10.26사태후 기대했던 국민주권 회복이 불투명 해지자 일어난 항거이며, 특히 5.18 광주사태가 군사정권에 탈취된 국민주권을 회복 하고 정치의 재군사화를 저지하려는 운동인가의 문제

o 5.17 戒嚴 擴大 措置가 光州를 對~~象~~으로 한 原因
계엄 확대 조치 광주 대상 원인

- 80년 5월 학생시위가 서울에서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자 이른바 '서울역 회귀'가 있었고, 운동권 세력이 지위를 중단하였으나
광주에서는 계속부쟁론으로 일관, 계엄령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더욱 가열된 것이 원인

* 2개 내내의 공수부대를 사건부임했다는 주장의 진위

나. 光州事態의 事前, 事後 操作觀
광주 사태 사전 사후 조작관

o 5.17措置와 關聯, 光州事態 操作觀에 대한 主張
조치 관련 광주 사태 조작설 주장

- '사전조작설' : 야당, 재야 운동권이 주장, 5공화국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집 권을 위해 사태를 조작했다는 주장

- '김대중 내란음모설' : 정부 수사당국은 김대중이 민주적 절차로는 정권획득 이 어려워지자 내란을 음모했고 이에 동조, 배후조종된 자들이 사태를 유발시 켰다는 주장

- 위의 두가지 주장 중 '사전 조작설'의 내용은

. 12.12사건으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한 세력이 힘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 해, 5.17 비상계엄확대, 김대중 체포 등을 모의

.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발이 예상되고 항의 시위가 확대, 군부의 정치개 입을 당연한 것으로 조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

* 그 근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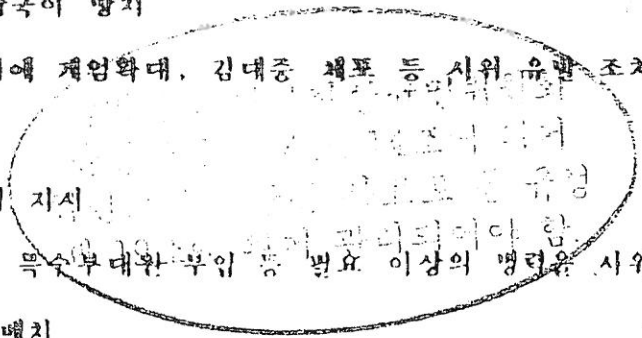
. 5.15까지의 시위를 계엄당국이 방치

. 5.16/17 시위 자체, 냉각기에 계엄확대, 김대중 체포 등 시위 유발 조치 감행

. 시위 유발후 강경 진압 방식 지시

. 평화적 시위에 5천명 이상의 특수부대원 투입 등 필요 이상의 병력을 시위 이전 (5.16) 광주 일원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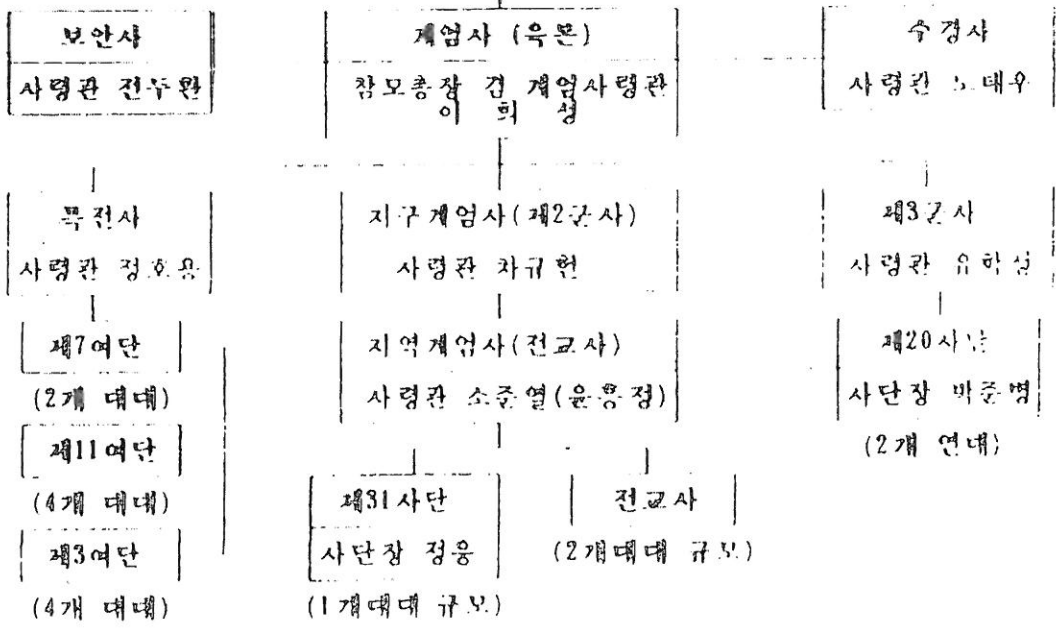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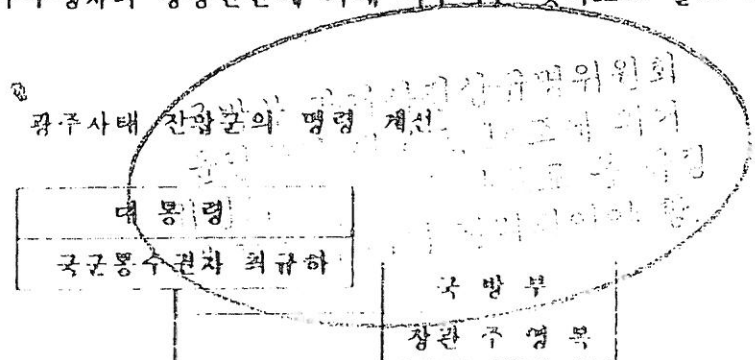
. 광주사태가 끝난 지 4일후인 5.31 국보위 출현 등을 제시



다. 發令 命令權者 및 責任所在
 발포 명령권자 책임소재

(1) 發令 命令 系統
 발포 명령 계선

- 헌법상 군 봉수권자인 대통령 계엄사령관 - 지구계엄사령관 - 지역계엄사령관 - 각급 계엄군 지휘관으로 이어지는 명령계선
- 최규하 대통령(당시)이 실제 군부들 장악하지못하므로써 당시 군대 이동, 작전 등 모두 계엄사령관이 담당했다고 주장
- 도의적, 법적 책임은 대통령, 실제 책임은 계엄사령관이라는 한계
- 다만 계엄사 훈령 11호(22일 12:00) 하달 이전의 발포는 자위권 발동에 따른 것이며, 당시 임무수행자의 상황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발포 책임 묻기 곤란



(2) 最初 發砲 時點
최초 발포 시점

○ 威嚴司 側 主張 : 示威隊의 武裝化 이후 戒嚴군의 防禦的 發砲
계엄사 측 주장 시위대 무장화 방어적 발포

- 19일 이후 경찰 지.파출소에서 총기 분실 사고 발생
- 21일 02:00 시위대의 광주세무서 무기고 습격(카빈 17정 탈취) 이후 무장
- 21일 13:00 경, 도청앞에서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뿔 앞세우고 탈취기 관총에 의한 무차별사격을 하면서 계엄군에 접근해 올 때 방어를 위한 발포
- 21일 12:30 이후 5차대에 걸친 교도소 습격을 시도하는 무장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계엄군간의 본격적 총격전 발생
- 22일 12:00 계엄사령관 명의의 계엄훈령(11호)으로 최소한 자위권 행사 위한 사격명령 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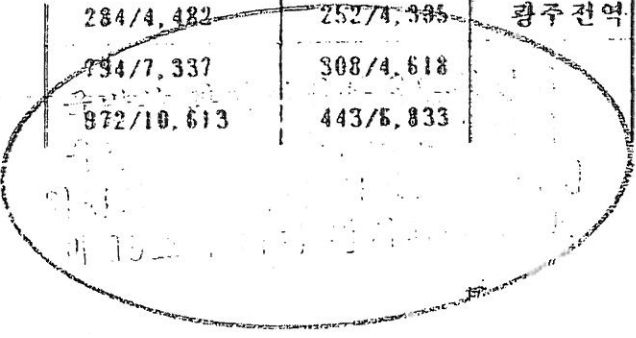
국방과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 被害者 側 主張 : 戒嚴군 측의 발포이후 시위대의 무장화
피해자 측 주장

- 19일 17:00 - 18:00 광주고교 근처에서 시위 당시 계엄군 장갑차로부터 의 총격으로 고교생 1명 사망
- 20일 22:30 광주역 시위에서 계엄군측 발포로 사상자 다수 발생
- 21일 01:00 - 02:00 광주세무서 무기고에서 실탄없는 카빈 탈취 이후 시위대의 무장화

- 라. 市民抵抗과 軍鎮壓作戰
 시민저항 軍鎮壓작전
- 敵嚴軍의 初期 過剩鎮壓 與否
 계엄군 초기 과적진압 여부
- 제7공수여단의 제1차 ~ 제5차 작전까지의 임무내용 및 작전 상황 공개
- 時間帶 別 投入部隊 및 兵力
 시간대 별 투입부대 병력

부 대 명		부입 일시	부입 병력	5. 27 작전	
				병 력	장 소
현 지 부 대	31 사단	5. 14 09:00	71/1,132	56/693	전남대
	전교사	5. 23 16:00	107/2,144	79/1,522	외곽 봉쇄차단
	소 계		178/3,276	135/2,215	
증 원 부 대	7 여단 (전남, 조선대)	5. 18 02:30	93/680	38/224	광주공원
	11 여단 (조선대)	5. 19 02:40	162/1,038	4/33	전일빌딩
	3 여단 (전남대)	5. 20 07:35	255/1,137	14/56	도청
	20 사단 (상부대)	5. 21 08:40	284/4,482	252/4,395	광주전역
	소 계		794/7,337	308/4,618	
총 계			972/10,613	443/6,833	



○ 當時 部隊 指揮官 및 現在 動向 資料
 당시 부대 지휘관 현재 동향 자료

당시 직책	계급	성명	현재 동향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대장	이희성	81. 2. 16부 전역 주택공사 이사장
지역계엄사령관 (전교사령관)	중장	윤흥정	80. 5. 22부 전역(중장)
20사단장	소장	박준병	84. 7. 7부 전역(대장) 13대 지역구 국회의원
31사단장	소장	정 응	80. 9. 30부 전역(소장) 평민당 입당
9공수여단장	준장	최새창	현역(대장) 합참의장
11공수여단장	준장	최 응	86. 7. 4부 전역(중장) 대사(주 파키스탄 87. 2. 10)
7공수단장	준장	심우식	87. 7. 31부 전역(소장)

국방부 과학사령장유망위원회
 윤영우 장준근, 고소연 외거
 임원회의... 유정
 이 1980년... 함

○ 진압 상황의 파악 여부는 兩是論(쌍무 책임)에 입각, 광주 학생·시민의 무기 탈취 및 무장 저항에 대해서도 ^{양시류}사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양쪽 모두에 대한 추궁은 소추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음

무기 탈취 현황

※ 총기류 : 총 5,008 정(98 % 회수)

구분 종류	총 계	회 수	미회수
계	5,008	4,926	82
M1	1,1285	1,228	7
CAR	3,646	3,580	66
M16	34	33	1
38 권총	16	15	1
45 권총	26	19	7
LMG 50	3	3	0
LMG 30	23	23	0
MG0	3	3	0
BAR	22	22	0

※ 실탄, 수류탄, 엽총, 폭약

구분 종류	피탈수	회수	미회수
실 탄	288,680 발	137,758	150,922
수류탄	562	517	45
엽 총	395	395	
폭 약	3,000 상자	3,000	

마. 死傷者 規模 및 財產 損害
 사상자 재산 피해

- 당시 계엄당국은 각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숫자에 한정 공식 발표, 실제로 초기 계엄군 트럭에 실려간 수미상의 사망자 숫자가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
- 정확한 사상숫자를 밝히기 위해 정부는 재신고 기간을 설정(5.14), 현재 신고접수중

(1) 사상자 규모

가) 총괄 : 1,045 명 (사망자 193, 부상 852)

신분별 피해구분	계	민간인	학생	군인	경찰
계	1,045	900	104	30	11
사망	193	193	93	23	4
부상	소계	767	71	7	7
	중상	122	101	21	
	경상	730	666	50	7

* 군경 부상자 중 군병원 치료자 101명은 미포함

국방부 장관 유영우 위원회
 1985년 5월 16일 제 163호 회차
 의정회 제 192회 회의 결과
 제 192회 회의 결과 본회의
 제 192회 회의 결과 본회의

나) 사망자(193 명)

1) 사인별

계	총상	타박상	교통사고 (압사)	자살	화상	미상
193	147	12	13	7	0	14

* 85년도 추가신고기간 중 사망확인자 2명 포함

2) 지역별

총 계	전 남						전북	서울	경찰	군인	미상
	소계	광주시	나주	화순	영암	기타					
193	148	7	10	8	6	19	1	3	4	23	12

(2) 재산 피해 현황

가) 차량

수량 종류	수 량	비 고
계	882 대	
공용차량	82 대	· 군, 경찰, 관공서 장비
민간차량	800 대	· 아세아 자동차 중고품 · 자가용, 영업용 등

나) 시설물 및 기타

수량 종류	수 량	비 고
건 물	250 동	· 피출소 등 공공건물 56동 · MBC 방송국 등 194동
시설물	884 개소	· 가드 레일 · 공중전화 버스 등
유 류	3,000 트럭	· 주유소 보유 유류
기타장비	1,925 점	· 전화기, 캐비넷 등

* 물질 피해 : 총 260억 상당

국방부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유형유형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산정한 사표로 등 유성
부동산의 처분 권리가 있어야 함.

바. 特定 政治人 連累 意圖 : 金大中 內亂 陰謀 部分
 특정 정치인 연루 유도 김대중 내란 음모 부분

o 광주사태 관련자

구속	불기소	훈방	계	구속자 처리				소계
				만기	집유	잔형면제	형집행정지	
404	212	1,906	2,522	22	95	261	2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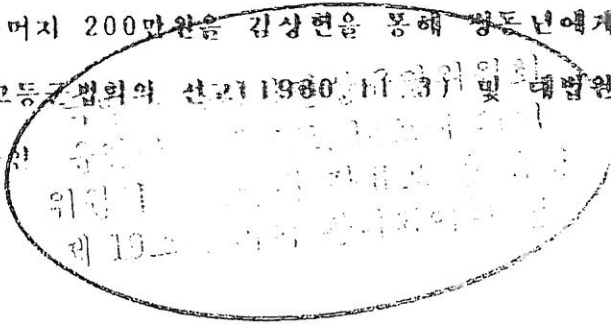
* 구속자 404 명 전원 석방, 이중 387 명 복권, 17 명 미복권

o 김대중 關係 部分
 관련 부분

- 80. 5. 5 19:30경 자가에서 김상현으로부터 정동년의 광주지방 민중봉기를 위한 자금 500만원 지원 요청 재의 접수
- 당일 300만원을 정동년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김상현으로부터 민중봉기 구상 계획을 설명 듣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

5월 8일 11시경 나머지 200만원을 김상현을 통해 정동년에게 전달

* 동 사실, 육군제임고등군법회의 산(21 1980.11.23) 및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1981.1.23) 확인



사. 當時 美國의 役割
당시 미국 역할

o 5.17 措置와 美國과의 關係 問題
조치 미국 관계 문제

- 5.17 이전부터 신군부세력은 미국측과의 연결 통로를 확보, 국회 예산과 정치인 거세 계획을 타진하였으나 미측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의 진위
- 5.13 국방부에서 연합사 사령관(위킴)과 국방장관 회담 사실 여부와 협의 내용, 그리고 이튿날(14일) 위킴이 휴가명목으로 공적인 일을 위해 도미한 이유

* 美國이 5.17 措置의 事前通報 接受 與否
미국 조지 사전통보 접수 여부

o 20師團 增派 決定과 美國의 作戰統制
사단 증대 결정 미국 작전통제

한국군 작전 권한 위임 사항 및 전략 지시 제1호(1978. 7)에 의거, 평시 한국군 후방 예비사단, 부전부대, 수경사를 제외한 전군이 한미 연합사령관의 작전봉제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20사단의 파견은 미국의 동의하에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

- 5.22 미국무성 내변인의 발표내용과 글라이스톤 주한 미대사의 위안터뷰 내용과의 차이

o 5.27 強制鎮壓作戰에 대한 美國의 保護
강제진압작전 미국 보호

미국의 비호사실로 27일 새벽 한국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6척의 군함과 F3A 공중조기경보기 2대를 한국 해공역에 출동한 사실을 들어 미국이 비호했다고 주장